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30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제한 폐지 및 기금 형 퇴직연금 관리·운용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추가	3
2.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운영 비용의 국고 부담(안 제23조 의14 및 제23조의15)	30
3. 근로복지공단의 계약형 퇴직연금사업 대상 확대(안 제26조) ..	34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8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써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 낮은 가입률('22년 53.2%)과 함께 극히 저조한 연금 수령률('23년 10.4%)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로써의 기능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국민퇴직연

금기금”이라고 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4호).

나.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다.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을 명시함(안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5).

IV. 검토의견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제한 폐지 및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운용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 중 기금형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①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상시 30명 이하 사용 사업장)을 폐지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관리·운용 기관으로 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 -----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 13. (생략) 14.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u>중소기업</u>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 16. (생략)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11.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12. · 13. (현행과 같음) 14.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란 <u>근로자</u>----- ----- -----<u>기업</u>----- ----- ----- -----. 15. · 16. (현행과 같음)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 -----. ② ----- -----
--	---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은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

-----.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
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
연금공단-----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제4장의2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신 설>

<신 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의 운영) ①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다음 각 호의-----
-----.

1. 근로복지공단(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2. 국민연금공단(상시 100명 초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②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기업퇴직연금기금-----

2.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u>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u>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u>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u>----- ----- -----
⑦ 위원장은 <u>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u>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u>기업퇴직연금기금</u>----- ----- -----.
⑧ (생략) 제23조의3(<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u>기업퇴직연금기금</u>의 관리 및 운용) ① -----<u>기업 퇴직연금기금</u>----- ----- ----- <u>기업퇴직연금기금</u>----- -----. ② -----<u>기업퇴직연금기금</u>----- -----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 ----- ----- ----- ----- -----

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
입 안내 업무

2. (생략)

② (생략)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5. (생략)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
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1.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기업퇴직연
금기금표준계약서-----

-----.

1. 2. (현행과 같음)

3. -----기업퇴직
연금기금-----

4. 5. (현행과 같음)

6. -----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

② -----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 -----

 -----기업퇴직
연금기금표준계약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기업-----
 -----기업퇴직연
금기금표준계약서-----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

-----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

-----기
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②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생략)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8(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1.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9(가입기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①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급여 종류 및 수급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로 본다. 2.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u>기업퇴직연금기금</u>----- ----- ----- -----<u>기</u> <u>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기</u> <u>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①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1. ----- -----. -----<u>기업퇴직</u> <u>연금기금제도</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본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
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1. -----

-. -----
-----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2. -----

-----.
-----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제23조의16(공단의 책무) ① ----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

② -----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③ -----기업퇴직연금기금표

<u>금표준계약서</u>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u>준계약서</u>----- ----- ----- ----- ---
④ (생략) <u>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17(지도·감독 등) -----</u>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u>제도</u>----- <u>공단의 기업퇴직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u>----- ----- ----- ----- ----- ----- -----.
1. <u>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u> 2. <u>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u>	<삭 제> <삭 제>
<u>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생략)</u>	<u>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생략) ③ ~ ⑤ (생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 <u>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 ----- ----- ----- -----<u>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 -----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퇴직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구성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¹⁾ 이와 별개로 ④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1)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DB, DC를 갈음하여 사용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 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①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IRP)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²⁾)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계약형**과 ②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DB, DC, IRP는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임.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구 분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개 관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 외부위탁
운용감독	금융기관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2)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근로자 가입률>

연도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인 미만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020	사업장 도입률	10.6	32.7	56.3	24.0	73.0	80.5	85.5	90.8	27.2
	근로자 가입률	11.9	29.6	47.2	33.2	55.1	59.5	66.4	69.1	52.4
2021	사업장 도입률	10.6	33.1	57.1	24.0	73.0	80.4	87.0	91.4	27.1
	근로자 가입률	11.8	30.2	48.3	33.6	56.3	60.8	68.5	70.7	53.3
2022	사업장 도입률	10.5	32.9	57.3	23.7	73.0	80.7	87.3	91.9	26.8
	근로자 가입률	11.9	30.0	48.6	33.5	56.6	61.0	68.9	70.5	53.2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중퇴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3년 기준 382조 4천억원이고,³⁾⁴⁾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205조 3천억원,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101조 4천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 중퇴기금제도(0.5조원) 포함 시 382조 9천억원임.

4) 타 연기금 규모(2023년): 국민연금 1035.8조원, 사학연금 26.3조원, 공무원연금 7.8조원

75조 6천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333조 3천억원(87.2%)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된 반면, 49조 1천억원(12.8%)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적립금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05.3	100.0	101.4	100.0	75.6	100.0	382.4	100.0
원리금보장형	195.8	95.3	83.1	81.9	54.5	72.1	333.3	87.2
실적배당형	9.6	4.7	18.4	18.1	21.1	27.9	49.1	12.8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5년 연환산 2.35%, 10년 연환산은 2.07%이고, 적립액 비중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은 5년 연환산 2.12%, 10년 연환산 2.01%로 실적배당형에 비해 각각 2.16%p, 0.74%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수익률 현황>

(단위: %)

권역	구분	DB	DC·IRP특례	IRP	전체
전체	5년	2.18	2.56	2.54	2.35
	10년	2.01	2.26	1.99	2.07
원리금보장형	5년	2.18	2.14	1.84	2.12
	10년	2.04	2.13	1.74	2.01
실적배당형	5년	3.25	4.51	4.32	4.18
	10년	2.88	2.84	2.62	2.75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 검토의견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DB, DC, IRP)에 해당하는데,⁵⁾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DB형의 경우 사용자, DC·IRP의 경우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적고, 근로자로서는 제한적인 금융지식, 노후자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5)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2023년 기준 적립금이 4,734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2023년 기준 382조 4천억원) 비중에 비추어 소규모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①소규모 사업장(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퇴기금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②근로복지공단이 운영 하던 중퇴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③국민연금공단이 대규모 사업장(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구분	현 행	개 정 안
계약형	DB, DC, IRP (운용: 퇴직연금사업자 ⁶⁾)	(좌 동)
기금형	중퇴기금제도(30인 이하) (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제도(100인 이하) (운용: 근로복지공단)
	<신 설>	국민퇴직연금제도(100인 초과) (운용: 국민연금공단)

6)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④ 법 제2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것은 ① 퇴직연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기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장기적·집합적·전문적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②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		직역연금(183만명)※'22년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2층		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	
1층	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		
0층	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료: 보건복지부(2024. 9.), “연금개혁 추진계획”

또한, 개정안은 가입자의 투자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퇴직연금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입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제한적인 금융지식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연금 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제도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중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⁷⁾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나,⁸⁾⁹⁾ 퇴직금(연금)의 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¹⁰⁾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투자 주체(=공공기관)와 책임의 귀속주체(=근로자)가 상이하고, 기금운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주체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불임금적 성격에 해당하면서도 근로자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하여야

7)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중 일부(예: 8.3% 중 3%)를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전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금을 수급시점(예: 55세 또는 60세)에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8)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①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46.4%),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 강화(27.1%),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현행 유지(20.3%), ④ 잘 모름(6.1%) 순으로 나타났다.

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2024. 7.),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p. 224.

10) 다만, 주된 6개 설문조사 과제(①보험료율·소득대체율 ②의무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 ③사각지대 해소 ④기초연금 ⑤직역연금 ⑥세대 형평성) 외의 부가조사에 해당하고, 타 과제와 달리 별도의 학습 없이 설문이 이루어졌음.

할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제약될 수 있고, 해당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서는 타인의 의사에 따른 투자책임을 귀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반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사용자·근로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 주체와 책임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식별 투자책임>

구분	계약형	기금형
투자주체	가입자(사용자·근로자)	기금(공공기관)
		≡
책임귀속주체(손익귀속)	가입자(사용자·근로자)	근로자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병립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초과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국민퇴직연금제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는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적인 투자조직을 활용하여 대규모 집합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인바, 단일한 기금운영주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

는 것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기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퇴기금제도가 2022년 9월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기금형 참여기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¹⁾

기획재정부는 관리체계를 이원화하는 것(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현재 중퇴기금제도를 활용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기금에 관한 조직 및 인력 등 별도의 관리·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①특정 공적 주체에게만 기금형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역량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 ②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공적 기금형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믿고 투자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신뢰를 손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③ 거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이 민간 기업 경영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도 있다는 점, ④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금융위원회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되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임.

금융권(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은 ①퇴직연금 시장에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추가 진출할 경우, 민간의 퇴직연금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 및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¹²⁾ ②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경계를 허물고 동일한 지배구조 하에서 자산이 운용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이해상충은 불가피하다는 점,

③공공의 개입 없이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88.5%¹³⁾(통계청, '22년 기준)에 달하는 10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한 공공의 추가 개입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점, ④1,000조원 이상의 적립금¹⁴⁾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도 진출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공단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제도 보완 노력¹⁵⁾이 선행된 이후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의견제출(2024. 10.)

13) 2022년 기준, 통계청

14) 2024년 6월 기준 적립금 1,185조원

15)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22.4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23.7월)되었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24.10월) 및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24.12월)이 예정되어 있음.

2.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운영 비용의 국고 부담(안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5)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가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5).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u>중소기업퇴직연금</u>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u> 또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u>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 <u>기업퇴직연금</u> ----- ----- ----- <u>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③ ----- ----- -----

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를 폐지한 경우 ④ ~ ⑥ (생략) <u><신설></u>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15(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가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입자부담금 또는 중퇴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퇴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데,¹⁶⁾ 지원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2022년~2024년 지원 실적>

(단위: 명, 개소,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주	지원예정 인원	54,420	87,072	87,358
	실지원 인원 (사업장 수)	1,113 (413)	21,844 (6,313)	40,560 (11,537)
	지원예정 금액	3,115	9,240	9,578
	실지원 금액	38	2,303	4,349
근로자	지원예정 인원	-	-	87,358
	실지원 인원	-	-	33,309
	지원예정 금액	-	-	9,578
	실지원 금액	-	-	2,887

*2022년 9월부터 중퇴기금제도 실시

**9월까지 자료임.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자를 전(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점, 공공기관이 기금형 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6)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사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중퇴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입자의 부담금 납부분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원 근거가 상실되어 사용자·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곤란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한정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영세사업장 지원 필요성,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근로복지공단의 계약형 퇴직연금사업 대상 확대(안 제26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공단의 업무 범위를 상시 30명 이하 사업에서 100명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6. <u>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 -----100명-----</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DC, IRP)를 운영할 수 있어¹⁷⁾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한 중소기업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금운용지시를 전달하는 운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지원 서비스 가입 사업장 수는 76,668개소이고 대상자는 398,248명이며 적립금은 4조 3,456억원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퇴직연금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 중 99.8%(4조 3,355억원)는 DC형, 0.2%(101억원)는 IRP형에 가입되어 있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DC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가입상품 기준	43,355	100.0	101	100.0	43,456	100.0
원리금보장형	41,830	96.5	93	92.1	41,923	96.5
실적배당형	1,525	3.5	8	7.9	1,533	3.5

* 2023년 기준

17)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용자의 사무부담을 경감하여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원활한 퇴직연금제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30인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중퇴기금제도가 2022년 9월 도입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는 한편,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노·사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가입대상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